

# 경상북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

「공인중개사법」 제32조 및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중개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.

2021. 10. 19.

경 상 북 도 지 사



## 1. 주택의 중개보수

거래내용	거래금액	상한요율	한도액
매매 · 교환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6	25만원
	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	1천분의 5	80만원
	2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	1천분의 4	
	9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	1천분의 5	
	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	1천분의 6	
	15억원 이상	1천분의 7	
임대차 등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5	20만원
	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	1천분의 4	30만원
	1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	1천분의 3	
	6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	1천분의 4	
	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	1천분의 5	
	15억원 이상	1천분의 6	

※ 요율상한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와 약정

## 2. 오피스텔 및 주택 외 중개보수

구분	오피스텔		주택 외
	매매·교환	임대차 등	매매·교환 및 임대차 등
요율상한	1천분의 5	1천분의 4	1천분의 9

※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m<sup>2</sup> 이하의 전용입식부엌,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, 주택 외는 상가, 농지, 임야 등의 부동산을 의미함.

## 3.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 계산

- 보증금+(월 단위의 차임액×100)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  
다만,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+(월 단위의 차임액×70)으로 산정한다.

중개보수(주택·오피스텔·주택 외)는 해당 요율상한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상호 약정(협의)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음.

## 4. 실비의 한도

청구의 범위	금액
•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	1건당 1,000원
•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	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
• 교통비, 숙박비 및 계약금 등의 예치·반환·보증수수료	실비

## 5. 중개보수의 지급시기

-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,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.